

토닥이가 알려주는!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유포, 유포협박, 전시·판매 하는 등,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말해요.

#자료 출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_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재단법인 |
충분한 고민을 배려하는 청소년진흥원
CHUNG CHEONGNAM-DO YOUTH DEVELOPMENT AGENCY

토닥이가 알려주는!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디지털그루밍
 ‘디지털그루밍’이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메신저, SNS를 통해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으려고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다양한 통제와 조종기술을 사용하는 걸 말해요.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나요.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동의 없이 성행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합의하에 성적인 영상을 촬영 했더라도 동의없이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해요.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 후 게시하는 경우
 공공장소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어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는 경우를 말해요.



토닥이가 알려주는!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단톡방 안에서의 성희롱,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 게임 상에서 성적인 모욕주기, 명예훼손성으로 성적 명의 및 사진을 도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요.



#유포 협박

괴롭힘 등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를 말해요.



#사진 성적 합성 후 게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합성하고 성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해요.



#재유포 및 제3자 유포

최초 유포 이후에 원유포자, 혹은 제3자에 의해서 2차로 유포되는 경우를 말해요.





| 재단법인 |

충분한 거리 남을 배려하는 청소년진흥원
CHUNG CHEONGNAM-DO YOUTH DEVELOPMENT AGENCY



“365일 24시간 언제나”

고민이 있을 때
청소년 상담

1388